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 실시 안내

사법연수원은 실무능력을 겸비한 우수한 전문법조인 양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생의 2021년도 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 1, 2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실무수습 시간 및 실시시기

가. 실무수습 시간 : 총 80시간으로 운영

- 사전강의 1일 8시간씩 2일(16시간) + 실무수습 1일 8시간씩 8일(64시간)

나. 실시시기

- 연수원 사전강의 : (1차) 2021. 7. 5.(월) ~ 7. 6.(화)
(2차) 2021. 8. 9.(월) ~ 8. 10.(화)
- 법원별 실무수습 : (1차) 2021. 7. 7.(수) ~ 7. 16.(금)
(2차) 2021. 8. 11.(수) ~ 8. 20.(금)

다. 법학전문대학원생은 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 1~3차 중 하나의 과정만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고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참고로 기본과정 3차는 동계 방학기간 중 실시하고, 추후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임)

2. 연수원 사전강의

가. 단기간의 실무수습 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실무수습에 필요한 기본사항 및 실무과목(민·형사 절차론 등)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질 예정임

나. 실무수습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수강하여야 함

다. 구체적인 강의시간 및 강의내용 : 추후 공지 예정

라. 장소 : 각 법원 내 정해진 장소(사법연수원 강의를 송출할 예정임)

3. 법원별 실무수습

가. 법학전문대학원이 소재하는 지역의 각 지방법원 및 지원

-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

지법(1차만 실시),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 고양지원(1차만 실시), 부천지원, 성남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¹⁾

- 대전지법, 청주지법
- 대구지법
- 부산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군산지원

나. 해당 법원의 규모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수습이 곤란할 경우에는 실무수습생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여 인근 지역의 법원으로 배정함

4. 실무수습 지원자격

가.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1학기 이상 이수자(2021. 6. 이수예정자 포함) 중 법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실무수습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추천된 자 [별지1 「법학전문대학원별 실무수습 인원 상한표」의 각 법학전문대학원별 배정 인원의 범위 내에서]

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취소된 2020년도 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 3차 지원자 중 2021년도 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 1, 2차 희망자 [별지2 「2020년도 기본과정 3차 지원자 중 2021년도 기본과정 1, 2차 희망자 명단」 기재와 같음, 이하 약칭하여 ‘2020년도 기본과정 3차 지원자’라 함]

다. 위 나.항의 인원은 위 가.항의 각 법학전문대학원별 배정 인원과는 별도로임

※ 2020년도 기본과정 3차 지원자(기본과정 1, 2차 희망자 22명)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법원실무수습 기회 보장(취소된 2020년도 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 3차 지원자 중 ‘2021년도 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 3차 및 심화과정 희망자’에 대하여도 추후 동일한 방식으로 우선권을 부여할 예정)

5. 실무수습 인원

가. 수습인원 : 약 384명[1차 : 201명(그 중 17명이 2020년도 기본과정 3차 지원자), 2차 : 183명(그 중 5명이 2020년도 기본과정 3차 지원

1) 즉, 서울서부지법, 고양지원은 기본과정 1차만 실시하고, 그 외 지법 및 지원은 기본과정 1차 및 2차를 모두 실시함

자), 각급 법원의 수용가능 인원 고려]

나. 법학전문대학원별 수습인원 할당 방법

-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균등하게 실무수습 기회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함
- 법학전문대학원별 실무수습 인원의 상한은 각급 법원의 수용가능 인원과 법학전문대학원 전체 정원 대비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 비율을 고려함

다. 이번에 실시되는 실무수습 기본과정의 진행상황과 성과, 법학전문대학원별 실무수습생의 수습태도나 능력, 실무수습 신청 철회 등을 이후의 실무수습 총 인원 및 법학전문대학원별 수습인원을 정할 때 반영할 수 있음

※ 실무수습 신청에 대한 철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습 법원 배정 공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구체적 사유와 함께 철회 의사를 밝혀야 함

6.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수습생 추천 및 실무수습생 선정

가.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실무수습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 중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자체 선정 기준에 따라 추천

나.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반드시 별지1 「법학전문대학원별 실무수습 인원 상한표」의 배정 인원 범위 내에서 추천하여야 함(다만, 별지2에 기재된 2020년도 기본과정 3차 지원자에 대하여는 ‘위 배정 인원과 별도로’ 추천하는 것으로 반드시 추천하여야 함)

다.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동일한 법학전문대학원생을 1차 및 2차(향후 3차)의 실무수습에 중복하여 추천할 수는 없음

라.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실무수습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추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천한 해당 실무수습생 전원을 최종 실무수습생으로 선정할 예정임

7. 실무수습생의 각급 법원 배정

가. 실무수습생의 희망,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각급 법원(5개 고등법원의

-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함) 및 각급 법원의 수용가능 인원 등을 고려하
 되, 법학전문대학원 소재지와 무관하게 배정할 수도 있음
- 나. 가급적 실무수습생의 희망을 반영하되, 수습신청이 특정 법원에 집중
 될 경우 법학전문대학원별 균등한 인원 배정(실무수습생은 복수의 실
 무수습 희망법원을 기재하여야 함, 아래 제10항의 해당 부분 참조)
- 다. 실무수습생 선정 및 각급 법원 배정 명단은 **2021. 6. 중순경** 법학전
 문대학원협의회를 통하여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통지

※ 서울서부지법, 고양지원은 기본과정 1차만 실시하고, 2차는 실시하지 않
 음에 유의

8. 실무수습 내용

- 가. 사전강의 : 위 제2항의 해당 부분 참조
- 나. 각급 법원에서의 실무수습
- 사법연수원에서 권장 수습항목 및 모델 프로그램 제시
 - 민사재판실무 : 실제 사건 기록 검토 및 법정 방청, 민사조정 교육
 및 참여 등
 - 형사재판실무 : 실제 사건 기록 검토 및 법정 방청 등
 - 지도관 부여 과제 등
- 다. 향후 수습인원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각급 법원에 배정함과 동시에
 사전강의과목 및 실무수습의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할 예정임

9. 실무수습 지도와 평가

- 가. 각 실무수습생별로 실무수습 담당법관(민사·형사지도관)을 지정하여
 실무수습 지도와 평가를 수행하게 함
- 나. 평가결과를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송부
- 다. 실무수습의 평가 자료는 법원의 법학전문대학원생 관련 각종 업무의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